

『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2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17일

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를 통하여 재정지원의 일관성 도모하고,
- 지역에 맞는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특화된 교육정주환경을 조성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여건개선 소요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범위 규정(안 제2조)
-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 범위 규정(안 제3조)
 - 일반회계 전전년도 시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30 범위내

- 보조금의 효율적 편성과 조정을 위한 검토·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(안 제4조)
 -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
-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과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(안 제5조, 제6조)
- 보조금 수행보고 및 검사사항 규정(안 제7조)
- 보조금에 대하여 학교예산편성 의무사항 규정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,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,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목적외 사용금지,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4조 제2항중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로 하면서 각1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각호마다 위촉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위촉시 마다 각호의 위촉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각호 중 고르게 위촉되지 않고 일부가 누락될 경우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여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각호의 위촉대상인원 명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